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06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서미화 · 최혁진 · 정혜경
서영석 · 용혜인 · 김예지
김태선 · 천준호 · 이학영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 인력과 전담 시설이 부족하여 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호자가 감당해야 할 추가 교육·돌봄 비용 부담과 소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장애인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차별 사례에 대한 상담·구제 체계가 미비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토대도 불충분하여 실질적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위탁·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취소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함(안 제30조의2).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장애인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비용 부담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 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화함(안 제30조의3).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돌봄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및 납입이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30조의4).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세제 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운송요금 할인 등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0조의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 가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
3. 장애인 가족 방문 돌봄지원
4. 장애인 가족 심리상담(동료상담) 및 휴식지원
5. 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
6.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8.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9.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0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을”을 “위탁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정을”을 “위탁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지정”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을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절차 등”으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민간 전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족지원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장애인가족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을 지원·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경제활동 축소·중단·포기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족
2.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가족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4(장애인 가족의 국민연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의 돌봄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경제적 부담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을 지원·조력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운임 등을 감면·할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족지원센터

제83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가족지원센터 위탁 취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

정을 받은 자는 제3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p>	<p>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장애인과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며 실질적으로 부양·양육 또는 보호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p>
<p>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u> 2. <u>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u> 3. <u>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u> 4. <u>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u> 5. <u>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u> 6. <u>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u> 7. <u>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u> 	<p>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애인 가족 실태조사</u> 2. <u>장애인 가족 권리 옹호 및 위기 가정 지원</u> 3. <u>장애인 가족 방문 돌봄지원</u> 4. <u>장애인 가족 심리상담(동료상담) 및 휴식지원</u> 5. <u>장애인 가족 건강관리 및 자기관리 지원</u> 6. <u>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u>

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정보 제공

- 7.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8.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9.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민간 전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략)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항에 따라 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력·시설 및 재정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위탁을-----.

1. -----
-----위탁을-----
2. 제6항에-----위탁-----

3.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 기준·절차 등

<신 설>

제30조의3(장애인가족수당)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장애인 가족의 장애인을
지원·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추가 비용 부담, 경제활동
축소·중단·포기에 따른 소득
수준의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장애인가족수당
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가
족
 2.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가족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의4(장애인 가족의 국민연
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가족 중 장애인
의 돌봄을 위하여 생계를 같이
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신 설>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경제적 부담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할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가족의 경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② (생략)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 5. (생략)

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을 지원·조력하기 위하여 장애인 가족의 운임 등을 감면·할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가족지원센터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의2(청문) -----

-----.

1.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가족지원센터 위탁 취소

2. ~ 5. (현행과 같음)